

## 2. 2014년 재정운영 방향

### □ 재정전망

- 2014년 **세입전망**은 지방세수의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지방교부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**2013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**
  - ※ 취득세 영구인하시 세입부문 변동 예상
- **세출수요**는 ①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,  
②동계올림픽 투자 본격화, ③ 생물다양성 총회 등 신규수요로 인해 **재정부족액이 최소 700억원 이상 발생** → 초긴축재정운용 불가피

### □ 예산편성 방향

#### ▶ 지방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

- 지방예산의 계획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한 **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**
-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**지방재정 투자심사 강화**
- **정부3.0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 정보 공개 대폭 확대**
- **재정 인센티브·제널티제도 확대 및 운영현황 공개**
- **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** 기반 마련

#### ▶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

#### ○ 세출구조조정 지속 추진

- **기존 사업**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**원점(zero-base)에서 재검토**하고, **신규 사업**은 기획 단계부터 **타당성을 철저히 검증**

※ 절감된 예산은 재난안전·복지지원 등에 재투자

- **선심·권시성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·중복사업 통·폐합**
- 청사 기준면적 준수, 리모델링 권장 등 **청사 확대와 및 신축 억제**
- **소규모 기금은 통폐합, 지출관리도 예산수준으로 강화**
- **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 관리 강화**

▶ **지방채무 관리 강화**

- 채무과다 단체 및 한도액 초과 발행 단체는 **5년 채무관리 계획 수립 추진**하고,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는 **주민에게 공개**
- 향후 지방재정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채무(예산외 부담 행위 포함) 등 **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**

▶ **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**

- **일자리 창출 확대**와 국민행복연금 등 기본적인 **복지 무자 확대**
- 유통구조 개혁,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**소득증대 도모**

▶ **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기능 강화**

- 어린이 등 **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** 및 **안전의식 제고**
  - 어린이, 여성,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및 **재난·재해** 등에 **선제적**으로 대응
- **위험지역 시설개선** 및 **민간단체 협력 증진 강화**

▶ **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** 등 신성장 동력 확보

- **청년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**
- **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재정지원**을 강화

## ▶ **세입확충 노력 강화**

### ○ **지방세·세의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충**

-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, 관허사업제한,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병행

### ○ **일몰제 엄격 적용으로 비과세·감면 축소** ('11년 22.5% → '17년 15% 수준)

- 목적에 비해 감면규모가 과다하거나, 장기·만성화된 감면 축소

## □ 자율편성사업 예산편성 운영기준

- 법령·조례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
  - 세입·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
  - 예산편성 사전 이행제도(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등) 준수
- **실·국 자율편성사업의 모든 세출은 당초예산 편성 원칙**
  - 실국 자율편성 한도액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한 후 추경요구 불가
- 기존 사업에 대한 **강도 높은 예산일몰제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실시**
  - 실국별로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일몰을 실시하고 그 재원으로 신규 시책사업 추진
  - 사업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통해 세출예산 구조조정
- ※ **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몰적으로 결감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지양**
- 대규모 신규 시책사업은 재정여건(재정부족액 700억원 이상)을 감안하여 국비 등 **중앙재원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추진 가능**
  - 중앙재원 등을 확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도비부담은 예산편성 가능
- 실국에서 제출한 **실국 한도액 범위 내 자율편성예산은 100% 수용\* 원칙**
  - 단,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
- \* 실국에서 한도액을 초과하여 「한도 외 예산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실국 자율편성예산을 삭감하여 한도 외 사업에 편성 가능
- 행사·축제의 **원가회계정보 공개를 위해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**
  - 행사·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
  -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회계정보 관리
- ※ **불필요한 선심성 행사·축제사업 예산일몰을 위해 원가관리 강화**